B2B구매론 계약서(구매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 ~ 제8조 <기재 생략> **제9조 (개별대출의 상환)** ①~③ <기재 생략>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 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 ⑤~⑥ <기재 생략>	**제1조 ~ 제8조 <현행과 동일>** **제9조 (개별대출의 상환)** ①~③ <현행과 동일>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 ⑤~⑥ <현행과 동일>	- 약관변경 권고반영
제10조 ~ 제13조 <기재 생략> **제14조 (면책)**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<신설> ② <기재 생략>	**제10조 ~ 제13조 <현행과 동일>** **제14조 (면책)**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<삭제>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 ② <현행과 동일>	- 약관변경 권고 반영
제15조 ~ 제17조 <기재 생략> <신설>	**제15조 ~ 제17조 <현행과 동일>**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	